

고시 제2016-1호

2017년 사회복지법인 기쁨의복지재단 예산 고시

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4항에 의거 2017년도 사회복지법인 기쁨의복지재단 예산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1. 고시기간

- 2017년 예산서 : 2016. 12. 13 ~ 2017. 01. 01(20일간)

2. 고시 장소 및 방법

- 포항시청 홈페이지(시정소식-기관단체공지란)
- 기쁨의복지재단 홈페이지

3. 고시내용

- 2017년 기쁨의복지재단 세입·세출 예산(총괄)

2016년 12월 13일

사회복지법인 기쁨의복지재단 이사장

